

우리 나라 師範大學의 課題

姜 煥 國

(忠北大 社會教育科)

教師養成을 위한 專門教育機關으로 설립된 師範大學은 質的으로 우수하고, 量的으로 適正한 教師의 양성이라는 二大課題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위해서는 오늘의 한국의 師範大學은 새로운 시대적, 사회적需要와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改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

師範大學은 教育法 第118條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教員養成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職業教育機關이다. 즉 師範大學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廣汎하고 精緻한 應用方法을 教授研究하며 指導의 人格을 陶冶하는 것을 目的”(教育法 108條)으로 하는 일반 대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教育法에서도 大學과 師範大學을 구별하여 대학은 第5章 教育機關의 第5節에, 師範大學은 第6節에 節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教育法施行令 第44條의 ②項〈大學의 定義〉에는 “대학이라 함은 教育大學, 師範大學과 專門大學을 제외한 대학(單科)과 대학교(綜合)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法律的으로 대학을 언급할 때에는 師範大學은 제외되는 것이고, 師範大學을 포함하여 대학

을 논의할 때에는 반드시 ‘師範大學’이라는 명칭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教育法 第152條 〈授業〉 ①項에는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 師範大學, 教育大學, 專門大學은 夜間授業 또는 季節制授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第154條 〈學年制〉 ①項에도 “大學, 師範大學, 教育大學, 專門大學과 各種學校를 제외한 각 school學生의 進級 또는 卒業을 學年制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第115條 〈學科 및 教科〉 ①項에서도 “大學, 師範大學, 教育大學, 專門大學, 各種學校를 제외한 각 school의 學科 및 教科는 大統領令으로, 教育課程은 文敎部長官이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師範大學을 일반 대학과 별도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師範大學을 대학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教育法의 정신 혹은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師範大學은 일반 대학과는 다른 특수 職業敎育機關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는

가? 물론 感科大學이나 工科大學도 專門職을 위한 教育機關이다. 그러나 師範大學은 일반 대학이 목표로 하는 職業과는 다른 특수한 직업, 즉 인간을 대상으로 計劃의인 人間化를 추구하는 教職의 특수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教育機關이다.

이같은 이유에서 國立 師範大學에서는 재학중 授業料를 면제해 주고 또 국가가 이를 졸업생에게 教職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다른 어느 系列의 대학이 재학생들에게 授業料를 면제해 주고, 국가가 그런 대학의 졸업생에게 發令까지를 保障해 주는가?

이와 같이 師範大學은 教職에 종사할 教師의 養成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職業大學인 것이다. 그런데 특수 職業大學의 성격을 떠고 있는 현행 師範大學은 本質的으로 두 가지의 큰 課題를 안고 있다. 그 첫째는 師範大學의 졸업생과 中等學校 教師需給간의 量과 관련된 과제이고, 둘째는 바람직한 中等學校 教師를 양성해야 한다는 質과 관련된 과제이다.

II

그러면 먼저 師範大學의 量의 과제부터 생각해 보자.

師範大學 졸업 후 教職에 발령받지 못한다면 이는 첫째, 國家豫算의 낭비이다. 忠北大學校 師範大 학생에게 1년에 면제해 주는 수업료의 액수는 아침잠아 약 12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를 전국의 10개 國立 師範大學으로 확대하여 환산하면 120억 원이 넘을 것이다. 또 아무리 훌륭하고 質 높은 教師가 양성되었다 하여도 발령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1년, 2년 또는 그 이상 대기하다가 發令을 받았을 때 師範大學에서 함양된 教授能力이 학교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을지는 자못 의심스럽다. 아울러 發令이 적시에 나지 않을 경우 師範大學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教師가 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혹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해도 師範大學은 특수 職業大學임으로 인해 이들 졸업생이 他職種에 취업하는 데 많은 제한점이 따르는 실정이다.

文敎當局은 앞으로 教師養成의 방향을 師範大

學 중심으로 一元化하고, 각 國立 師範大學의 정원을 地域別, 教科別需給을 고려하여 채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地域別, 教科別로 불균형이 심하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보면 해당 道 教育委員會의 教科別 教師需要와 해당 道에 있는 國立 師範大學의 教科別 教師供給을 균형있게 조절하여야 할 과제가 제기된다.

앞으로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教師의需要是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教師의 退職率과 學級數의 변동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판단이 가능하다. 더구나 중학교가 1985년도를 기하여 농어촌 벽지부터義務教育化되도록 教育法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될 경우 중학교 教師를 師範大學에서 양성할 것인가 아니면 教育大學에서 양성할 것인가의 결정에 의해 師範大學 졸업생의 진로는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敎育大學이 2년제일 당시인 1970년의 한 調査報告에 의하면 敎育大學의 修學年限을 연장하여 中學校 教師까지 양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나타났는데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종서 외, 교원 양성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연합회, 1970, p. 65). 또한 農村 中學校의 小規模化와 함께 國民學校 並設中學校가 늘어가고 있으며, 管理行政에 있어서도 중학교는 국민학교와 같이 教育長 관할이라는 점도 역시 주시해야 한다.

실제로 文敎部는 도서·벽지 국민학교의 並設中學校 未配置科目教師를 충원하는 방안으로 現職 初等教師 중에서 中等教師資格證 소지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즉 이들 並設中學校에 국어, 영어, 수학, 資科 등 주요 과목은 中等教師를 배치하되 기타 未配置科目은 初等教師 중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中等教師 資格證 소지자를 우선 발령해서 充員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중학교 교사 양성까지도 敎育大學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장이나 의견이라기보다 師範大學 졸업생과 敎育大學 졸업생을 중학교에 같이 배치하였을 때의 실질적인 敎育成果이며, 이의 여하에 따라 어느 대학에서 양성할 것인가의 판정이 내려질 것이다.

어쨌든 師範大學이 教師의 需給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난제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며 이러한 難題解決의 여부가 師範大學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적 요인일 것이다.

III

또 한 가지 과제는 質的으로 우수한 교사의 양성에 관한 문제이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師範大學은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職業大學이므로, 이 設立 목적을 성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質的으로 우수한 교사가 양성되려면 우수한 학생과 교수, 적합한 教育課程, 보다 나은 教育環境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주로 教育課程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은 우수한 教師란 어떤 資質, 行動 特성을 갖춘 교사인가 하는 概念規定의 문제일 것이다. 또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師範大學에서 양성해야 할 교사는 중학교 교사인가 혹은 고등학교 교사인가, 아니면 양쪽 다일까 하는 것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결론적으로 師範大學이 양성해야 할 교사는 중·고등학교 教師로서 教育觀이 정립되어 있고, 教職意識이 투철하며, 자기가 담당할 教科에 대한 지식 및 技術과 教授技術, 즉 教科教育學의 배경이 갖추어져 있고, 學級經營 및 生活指導能力이 갖추어진 교사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師範大學의 教育課程은 통상적으로 教養課程, 教職課程, 專攻課程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일반 대학에서 教職課程을 선택한 학생의 教育課程과 전혀 구별이 안 된다. 특히 教職課程과 專攻課程의 구분은 각별한 논의의 여지를 안고 있다. 師範大學의 教育課程에 있어 教職課程은 專攻課程이며, 전공과정은 教職課程이다. 이렇게 볼 때 師範大學의 教育課程은 교양교육과정과 교직교육과정으로 구분하든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師範大學에 있어 教職課程은 그 자체가 專攻課程으로서 별도로 사용될 수 없는 개념이며, 일반 대학에서나 副職課程 혹은 職業課程이란 용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논리로 師範

大學에 教職部나 教職科를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師範大學 자체가 教職部이며 師範大學의 모든 교수가 教職部 교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教職部는 일반 대학에서나 설치되어야 할 부인 것이다.

醫科大學, 工科大學, 藥學大學 등 師範大學과 같은 專門의 교육기관에서도 가칭 醫職課程이나 工職課程, 藥職課程이란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또 工科大學, 醫科大學, 藥學大學에 별도로 이를 들어 工職部, 醫職部, 藥職部과 같은 조직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職業大學의 논리와 함께 법률적 해석에서도 師範大學에 教職課程이란 적용될 수 없는 용어임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教員資格檢定令 第20條 <教職課程>에는 “① 大學 또는 專門大學이 資格證의 취득을 위한 教職課程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文敎部長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教職課程의 과목과 學點 기타 設置基準에 관하여는 文敎部令으로 정한다”고 规定하고 있다. 이 경우의 教職課程은 분명히 일반 대학의 教職課程에 적용되는 개념이지 師範大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教員資格運營指針을 보면 무시험 檢定審查要領에서 師範大學의 각 教育科는 구비서류로 教職課程의 학적부 사본도 요구되지 않고, 檢討事項에서도 해당되지 않는다. 단지 일반 대학에서 教職課程을修了한 자에게 해당된다.

따라서 教員資格檢定 施行規則 第12條에 규정되어 있는 教職課程에 관한 사항은 師範大學에서는 적용할 의무가 없고, 일반대학에서나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師範大學에 教職課程을 설치하고 이 課程의 과목을 일반 대학의 教職課程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파오를 대부분의 師範大學이 범해 왔다.

教師教育 그 자체를 위해 설립된 師範大學이 일반 대학의 教職課程 개념과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師範大學의 本質의 性格을 잘못 이해한 예서 연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專門職業人을 양성한다는 師範大學이 일반 대학과 동일한 教職課程을 제공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만일 師大와 非師大의 教職課程이 이와 같이 동질의 것이어도 된다고 하면 師範大學의 存在理由

는 어디에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師範大學 無用論이 대두되기도 하는 것이다. “본래 教職課程은 일반 대학에서 教師資格證 취득 희망자에게 과하는 教育學系統의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師範大學에 있어서는 專攻課程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다”(黃應淵, “中等敎員의 養成問題”, 「서교육」, 통권 326호, 1981, p.70). “敎職課程이 한 專門大學이나 非師範系 대학인 일반 대학의 非師範系 학과에서 師範系 학과와 동일한 教師資格證을 수여하기 위해 文敎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教育大學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師範大學이 非師範系 대학을 위해 설정한 教職課程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소위 ‘敎職課程’은 師範大學의 教育課程에서는 專攻課程에 포함시키고, 教育法 第118條의 정신에 입각해서 특성있게 차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관련된 科目, 教育學科의 專攻科目과 연계된 基礎科目이나 탐색 과목이 아니라 師範大學 각 教育科의 專攻科目과 연계된 과목으로 教職敎養科目이어야 할 것이다. 즉 ‘敎職課程’이 教育學의 세분된 영역을 고르게 배분한 學問科目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教職敎養科目으로서의 教育心理는 Psychology of Education이나 Educational Psychology가 아니라 Psychology for Education 또는 Psychology for Teacher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다른 과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과목들이 너무 이론적일 때 教育實際와 거리가 멀고 教科敎育學과 연계되지 못한다. 오히려 師範大學의 중심 學問인 教科敎育學의 개발에 장애가 된다. 즉 이 과정이 있음으로 해서 教育理論은 教職課程에서 배우고, 教育內容은 각과의 專攻課程에서 배우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二元的思考가 師範大學의 一般大學化를 초래하고 師範大學의 전문성, 특수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리에서 생각할 때 師範大學의 教育課程은 敎養課程과 專攻課程으로 2분하고, 專攻課程은 主專攻課程과 副專攻課程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主專攻課程은 一般敎育課程, 敎科敎育課程, 敎科內容課程, 教育實習課程으로 구성한다.

一般敎育課程은 「學生과 教育」, 「敎師와 教育」, 「環境과 教育」, 「哲學과 教育」, 「學級經營 및 生活指導」 등의 과목으로 구성한다. 敎科敎育課程은 「○○科 教育論」, 「○○科 教育課程과 教育評價」, 「○○科 授業의 過程과 演習」, 「○○科 教育研究」 등의 과목으로 구성한다. 敎科內容課程은 廣域型의 중학교 교과내용에 적합하게 구성하여, 教育實習은 I, II로 나누어 「敎育實習 I」은 師範大學敎育에 대한 入門課程으로 2학년초에 참관과 참여를 중심으로, 「敎育實習 II」는 4학년 1학기중에 실제 수업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副專攻은 반드시 필수화하고 부전공 자격증을 위한 교과라든지, 主專攻과 관련된 深化課程을 선택하게 한다.

IV

결론적으로 專門職인 教職에 종사할 전문인으로서의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師範大學은 敎師養成의 量의 문제와 敎師敎育의 質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교사의 質의 문제가 추상적이고 이상적이며 이론적이라면 교사의 量의 문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제적이다. 그러므로 量의 문제는 師範大學의 存續에 더 직접적인 要因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두 本質的 과제를 해결할 때 師範大學은 존속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師範大學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制度의側面에서의 한 가지 방안은 현재의 初等敎師養成機關인 教育大學과 中等敎師養成機關인 師範大學을 통합하는 것이다. 즉 각 道마다 설립되어 있는 教育大學과 師範大學을 통합하여 새로운 敎師養成機關인 師範大學이나 教育大學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低學年敎師(1~3학년의 敎科擔任敎師), 中學年敎師(4~6학년의 複數敎科擔任敎師), 高學年敎師(7~9학년의 廣域形敎科擔任敎師)로 분리·양성하고, 대학원에서는 分科型의 敎科敎師(현재의 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편제를 갖춘 敎師敎育制度는 교사의 양적인 需給과 질적인 教育課題를 해결하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